

호주제 폐지를 위한 소송백서 2



성평등도서관 여기



GL00008065

 서울여성연구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발간사

백승헌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2005년 2월은 한국사에서 기억되어야 시점입니다.

오랜 시간 양성평등의 걸림돌로 기능해 온 호주제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판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호주제는 오천년 우리 역사상 불변의, 고정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켜져야 할 금과옥조처럼 우리 국민들의 머리에 뿌리박혀 있었으며, 그 결과 인간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침해하며 남자는 존중받아야 하고 여성은 남성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반인권적인 생각들을 부추겨 왔습니다.

호주제의 폐지로 말미암아 우리 사회는 이제 드디어 본격적인 인간존중의 사회로 접어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호주제의 폐지는 남성에 대한 여성의 승리가 아니라 여성 억압의 철폐이자 동시에 남성 해방이기도 한, 진정한 인간 해방의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호주제의 폐지가 거저 얻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1960년 민법이 제정되고 나서부터 호주제가 여성인권과 존엄을 침해하는 제도라는 지적은 있어왔지만 호주제에 대한 사회 한편의 완고한 지지로 인해 그 폐지는 이루어지지 못해 왔습니다. 그 뒤 무려 4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여성계와 뜻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호주제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논의는 계속 켜져 왔고, 마침내 2000년 초 여성단체와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에 그 위헌판단을 요청하는 헌법소원재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로부터 5년간의 시간을 거쳐 위헌판단을 받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흘린 땀이 없었더라면 호주제의 위헌판단은 얻어질 수 없었을 것이며 우리는 아직도 호주제의 그늘 속에서 생활하고 있을 것입니다.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와 변호사들의 노력은 우리 사회의 인권옹호자로서의 모범적인 몸짓이자 한국 인권운동사상사에서 한 획을 긋는 사건으로서 역사에 길이 보존되고 연구될 가치가 있다 할 것입니다. 이에 그동안의 경과와 관련자료, 그리고 재판 기록 등을 묶어 호주제폐지백서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백서를 출간하기 위해 흠어져 있는 자료를 다시 모으고 정리하는 것은 또 다른 힘든 작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해 헌신한 모임의 여성위원회 위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이 자료들이 양성평등과 인간존중의 사회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분들에게 바치는 하나의 헌사로서, 그리고 그 뒤를 따라오는 많은 인권운동가들에게 귀중한 연구 자료로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한 재판관들의 질문에 언제나 막힘없이 답변하고 예리하게 설명하시며 후배 변호사들의 전범이 되어 주셨다. 이석태 변호사님은 소송을 제기하기 이미 몇 년 전부터 소송을 기획하고 변호인단을 만드는 일 뿐만 아니라 소송 제기엔 필요한 단체들과 필요한 일까지 빈틈없이 조율해주셨고, 늘 후배 변호사들을 격려하는 한편 헌법소원신청서 마무리는 물론 참고인섭외부터 절차진행까지 일일이 챙기며 재판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훌륭한 연출가가 되어주셨다. 강금실 변호사님은 가장 먼저 이석태 변호사님과 소송을 기획하고 이끌어주셨을 뿐 아니라, 소송진행과정에서 후배들을 두 번 감탄하게 하셨다. 강금실 변호사님이 쓰신 헌법소원신청서 가운데 일제 식민지 통치와 호주제도의 정작 부분 글에 담긴 지식의 방대함과 깊이가 첫 번째이다. 두 번째는, 강 변호사님이 법무부장관이 되신 뒤 법무부가 이전의 합헌의견을 바꿔 위헌의견을 밝히고, 고루할 것만 같던 법무부의 검사들이 신분등록제도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강 변호사님이 가진 설득력과 추진력이 아니었다면 지금 우리는 새로운 가족관계 등록제도를 대면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유정 변호사님은 변론을 맡는 한편 오랜 기간 법무부의 가족법개혁을 위한 논의에 참가하여 법무부가 호주제 폐지 입장으로 돌아서는데 큰 역할을 해주셨다. 전선미 변호사님은 탁월한 친화력으로 변호인단을 끌어다가며 변호인단이 여성·시민단체들과 원활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변호사 이상의 능력을 요구하는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토론자로 나서는 한편 새로운 가족관계 등록제도 논의에서 대법원과 법무부와 협의까지 도맡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 변호인단을 놓고 본다면, 여론이 호주제 폐지로 돌아서게 한 결정적인 공적은 진 변호사님에게 돌아가야 마땅할 것이다. 김수정, 조숙현, 이지선 변호사님, 최은정 판사님은 사법연수생 때부터 변호인단에 참여하여 조사와 연구, 헌법소원신청서 집필까지 변호사 몇 사람 몫을 해내셨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세 분 변호사님들은 변론은 물론 재판부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준비서면 작성까지 맡아 해내셨다. 이분들이 없었다면 헌법소원신청은 더 늦어지고 내용도 빈약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오직 사명감 하나로 스스로 나서서 5년여에 걸친 긴 소송에 맘 졸인 변호사님들에게 무어라 말할 수 없이 감사한 마음이다.

이 책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복지위원회 가족법연구팀에서 이미 오래 전에 기획되어 최윤수 변호사님과 박재화 간사님의 수고로 진작에 편집 작업이 모두 끝난 상태였는데, 발간사를 맡은 한 사람의 게으름 때문에 너무 긴 시간 동안 책으로 묶여지지 못하고 있었다. 판결 선고 후 책서발간까지 상당한 시간이 흐른 책임은 모두 나에게 있다. 소송에서, 책서 편집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동료들에게 송구스러울 뿐이다.

호주제 폐지를 위한 소송백서 2

< 목 차 >

1. 발간사: 백승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 01
 2. 서문: 원민경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 / 02
 3. 소회: 이정희 (여성인권위원회 전 위원장) / 03
 4. 목차 / 05
 5. 소송 경과 보고 / 09
 6. 헌법재판소 위원심판 소송 기록
 - 가. 호주제 폐지에 대한 찬반 의견서
 - 1) 위헌론
 - ① 여성부 의견서(2003.11.12일 자) / 13
 - ② 법무부 수정 의견서 / 21
 - ③ 여성부 의견서(2003.11.27일자) / 29
 - ④ 서울대학교 생물학과 최재천 교수 의견서 / 47
 - ⑤ 부산대학교 법학과 김상용 교수 의견서 / 54
 - ⑥ 서울대학교 법학과 양현아 교수 의견서 / 67
 - ⑦ 가정법률상담소 의견서 / 100
 - ⑧ 제청신청인 의견서 / 112
 - 2) 합헌론
 - ① 성균관장 의견서 / 134
 - ② 광주대학교 법학과 김준원 교수 의견서 / 143
 - ③ 정통가족제도 수호 범국민연합 의견서(2004. 3. 9.자) / 159
 - ④ 정통가족제도 수호 범국민연합 의견서(2004. 12. 8.자) / 177
 - 3) 기타
 - 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신회섭 의견서 / 205
 - 나. 변론 조서
 - 1) 2003. 11. 20.자 변론조서: 여성부 장관 의견진술 / 209
 - 2) 2004. 3. 11.자 변론조서: 김상용, 양현아, 구상진 각 신문 / 235
 - 3) 2004. 6. 10.자 변론조서: 김준원, 구상진 각 신문 / 410
 - 4) 2004. 11. 11.자 변론조서: 신회섭 신문 / 468
 - 5) 2004. 12. 9.자 변론조서: 최재천 신문, 가정법률상담소 소장 박배희 의견진술 / 512
- 다. 헌법재판소 2005. 2. 3. 선고 2001헌가9 결정문 / 593

3부 호주제 폐지 이후

- 3.1 김상용 '호주제도의 폐지를 대비한 하나의 대안-가족별편제방안', 호주제폐지 및 대안 심포지엄 자료집, 가정법률상담소, 2003.6
- 3.2 정현수 '개인별 신분등록제도에 관한 연구', 호주제폐지 및 대안심포지엄 자료집, 가정법률상담소, 2003.6
- 3.3 조대현 '호주제도의 폐지와 호적의 편제', 법조 469호, 1995.10
- 3.4 조대현 '개인별신분등록제도' 법률신문 3145호, 2003.2.10
- 3.5 법원행정처 '각국의 신분등록제도 및 우리나라 전산호적의 발전방향' 제2장 II. 현행 호적제도에 대한 평가
- 3.6 각국 신분등록부

4부 법률안

5부 참고자료 목록

5. 호주제 폐지를 위한 소송경과 보고

1. 소송준비단계

2000. 6. 7. •호주제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실무모임(이하 소송실무모임) 결성
* 참여자(강금실변호사, 이석태변호사, 진선미변호사, 이정희변호사, 조숙현연수생, 김수정연수생, 이지선연수생, 김유정, 홍윤선)
•소송실무모임 1차 회의
2000. 6. 23. •소송실무모임 2차 회의
2000. 7. 5. •소송실무모임 3차 회의
2000. 8. 3. •소송실무모임 4차 회의
2000. 8. 18. •소송실무모임 5차 회의
2000. 12. •대한변호사협회에 법률구조신청
2000. 12. 15.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결정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사업회 호주제위헌 소송
소송 수행변호사로 강금실, 이석태 변호사 위촉
2001. 4. 20. •소송실무모임 6차 회의
2001. 5. 11. •소송실무모임 7차 회의
2001. 6. 9. •소송실무모임 8차 회의

2. 소송진행단계

2000. 10. ~ 11. •각 구청에 입적신고서, 호주변경신고서 제출
•자를 모가에 입적하는 내용 및 현행호주를 무호주로 변경해달라는 신고
•각 구청 입적신고 및 호주변경신고에 대한 불수리처분
2000. 11. 28. •서울가정법원에 호주변경신고 불수리처분에 대한 불복 신청
•서울가정법원에 입적신고 불수리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2000. 12. 6. •서울가정법원 호적사무관장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결정
2000. 12. •위헌여부심판제청 신청(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서부지원, 남부지원)
2001. 1. 9.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입적신고 불수리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기각 결정
2001. 2. •서울가정법원 호적사무관장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
•위헌여부심판제청 신청(서울가정법원)
2001. 3. 27.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자는 부가에 입적한다)에 대한 위헌제청결정